

시간강사 규정(3-5-1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양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의 시간강사 위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 ① 시간강사는 박사과정 수료자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로 교육 및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자라야 한다.(개정 '95. 6. 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위촉할 수 있다. (개정 07. 8. 14)

1. 해당 학문분야에 권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개정 '95. 6. 7)(삭제 07. 8. 14)
3. 현장경험의 전문성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 (신설 07. 8. 14)

제3조(위촉의 절차 및 시기) ① 시간강사의 위촉은 소속 학부(과)장 또는 소관부서장의 관장하에 다음 서류를 갖추어 시간강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07. 3. 5, 07. 8. 14)

1. 시간강사 위촉 제청서(소정양식) 1부.
2. 이력서(사진부착) 1부.
3. 최종학력증명서 1부. (신설 07. 8. 14)
4. 경력증명서(해당자) 1부. (신설 07. 8. 14)

② 시간강사의 위촉은 매 학기 단위로 하며, 담당과목의 학기개시일 2주일 전까지 위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07. 8. 14)

제3조의1(위촉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신설 07. 8. 14)

1. 직전학기 평가결과가 소정기준에 미달된 자.
2. 교육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사실이 있는 자.
3. 제6조 제2항에 따라 해촉사실이 있는 자.
4. 기타 총장이 부적격하다고 인정된 자.

제4조(담당시간) 시간강사의 담당시간은 주당 8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단, 주당 14시간 이내에서 총장의 승인을 얻어 담당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07. 8. 14)

제5조(강사료 지급) 시간강사의 강사료는 강사료지급 규정을 따른다. (개정 07. 8. 14)

제6조(해촉) ① 시간강사는 강의학기의 종료와 동시에 위촉기간이 만료된다.

② 시간강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학과 교수회의 또는 소과부서회의에서 학기 중이라도 시간강사평가위원회에 해촉 심의를 요청 할 수 있다. (신설 07. 8. 14)

1. 수업에 충실치 않은 경우
2. 교수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할 경우
3. 교육자로서 품위를 손상한 사실이 있을 경우
4. 본 대학교의 발전에 저해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제7조(시간강사평가) 시간강사는 매학기 단위로 시간강사평가위원회의 평가를 받는다.

(신설 07. 8. 14)

부 칙

이 규정은 1995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0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7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7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